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양성진 편집인 김영수 전화 031-620-2473 FAX 031-620-2989

권두언

사이버안전, 선제적 대응체제 갖춰야

사이버안보연구소장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경찰의 소년범죄대응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김문귀

연구특집

CPTED의 법제도 운영에 관한 소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용길

한국 민간조사사업의 전개와 시장규모,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경제적 효과 추정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정웅

치안현장탐구

경찰 홍보활동의 방향성 변화에 대한 제언

경찰청 새경찰추진단 경사 정승혁

외국치안정책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김영수

미국 경찰개혁 보고서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주재관 총경 이준형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사이버안전, 선제적 대응체제 갖춰야

사이버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손 영 동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은 가상공간을 만들어냈다. 사이버공간은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와 인간의 지각이 만나는 곳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상세계는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창조했지만 언제든 무서울 정도로 현실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

2010년 3월 사이버소녀를 양육하는 게임에 빠진 한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부는 사이버 캐릭터에게 옷과 장신구를 사주고 블로그에 육아일기를 쓰는 등 갖 태어난 자신들의 딸보다 더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섬뜩하기까지 한 이 사건은 가상현실의 수준이 자연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돼가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대체로 불확실해져 가고 있고 기술 발전이 남아 있는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상현실을 허구로만 볼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복합체로 작용한다.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지식권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각종 기기나 설비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지식의 결합물로 재창출되어 오히려 사람들을 통제한다.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동이 조정당하고 결국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게 된다.

이렇듯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시스템은 사회관계에서의 질서를 잡고 조직하는 추상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훈련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현재의 확실성으로 바꿔주면서 이를 통해 사람을 훈련시킨다. 컴퓨터는 인간의 보조적 수단의 역할을 넘어선지 오래고 그 행동의 의미를 재구성할 정도가 됐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린다. 디지털화를 통한 수많은 인터넷의 혜택이 ‘작용’이라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사기 앱도 덩달아 늘어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개인 정보유출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디지털 기기는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사이버테러를 위한 공격도구로 이용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교묘하게 변형된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갈수록 지능화·고도화·조직화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흔적을 확인하고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디지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소스코드를 난독화했을 경우에는 이를 해독하는데 다양한 분석 기법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이버침해 사고는 사용자 부주의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법·제도적 장치를 잘 갖춰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킹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사이버공격은 사회질서를 흔들리는 선을 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이버공격이 인프라 운영에 지장을 주는 형태에서 파괴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이다. 디지털기회지수나 초고속 인프라는 단연 최고이지만, 그 이면에 '악성코드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까지 안고 있다. 악성코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화·자동화되고 있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이버공격도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격은 부수적 위협을 넘어선지 오래고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영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과학수사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됐다. 사이버범죄와 테러의 대응은 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발신지 추적은 물론 범죄나 해킹 공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이 그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말 그대로 방대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알아내고 상관관계와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 역량을 넘어 데이터셋 규모를 처리하며, 특히 비정형적 데이터의 처리는 범죄를 예측하거나 신속히 대응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이 탈세 및 세금 사기와 관련한 지구촌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미국 국세청은 탈세 및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예측 모델링을 통해 사기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을 구분해내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심야 휴대폰 사용 데이터를 토대로 통화량이 빈번한 지역을 따라 심야버스 노선을 설계해 시민 불편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한마디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고 또 선을 연결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진다. 단편적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고 부족한 관계를 메워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관계, 뜻밖의 요소가 드러날 수 있다. 2013년 4월 미국에서 보스턴 폭탄테러가 발생한 뒤 용의자 형제가 특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집한 사진·동영상·통화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수많은 전문가가 동원돼 분석해낸 결과였다.

경제·사회·기술적 환경변화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갈수록 다양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은 평상시와는 다른 특이한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며 팩트가 아닌 패턴을 발견하는데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커다란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있다.

빅데이터 분석·처리와 인지과학의 발달로 컴퓨터는 인간의 정서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한발 앞선 예측으로 논리적 인간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디지털 기기들은 각각의 목적을 내재화하여 살아있는 생명처럼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경찰이 이러한 변화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 [PSI](#)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경찰의 소년범죄대응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김 문 귀

들어가는 말

현 정부 들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근절 노력에 힘입어 피해율·검거율 등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주 학교폭력 사망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해소되기 힘든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현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대응 방식은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주의 모델과 소년의 갱생을 강조하는 사회복귀주의 모델(교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형사적 대응방식들은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소년범죄 현실에서, 재범률 감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년범죄 처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다.

회복적 사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제3자의 중재하에 범죄문제해결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회복, 당사자들의 사회재통합, 사회평화

의 재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대응에 관한 일체의 이론·패러다임·철학·제도 등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인 실무 프로그램으로는 조정모델(mediation models), 회합모델(conference models), 서클 모델(circle models)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 이념을 경찰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경찰의 현행 소년범죄대응의 문제점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보호·선도 중심의 정책들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시도들이고 그 단기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 응보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있거나 가해 소년에 초점을 둬으로써 피해의 원상회복적 관점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들을 보완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투영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법 활용방안 및 해결과제

경찰단계에서 소년사건에 회복적 사법 이념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찰

다이버전(Diversion)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인데, 경찰이 적절한 사건을 프로그램에 위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훈방 또는 정식 사건처리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둘째, 경찰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및 민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의의가 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보다는 좀 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공식적인 사법처리가 개시되기 전 갈등의 현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경찰활동의 방식이 있다.

외국경찰의 경우에는 경찰다이버전과 결합된 회합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에의 위탁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을 실무에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그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공은 경찰 자체의 실험 프로젝트 수행 등 자생적인 노력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관련된 경찰재량권의 법제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가능했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성공사례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성공적인 회복적 개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결과제로서 소년범죄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 전환, 둘째, 훈방 등 경찰재량권 및 경찰위탁의 법제화 등 입법적 조치, 셋째, 유효한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 넷째,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이 그것이다.

맺음말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이제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소년 범죄대응방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소년사건 처리의 제1선에 있는 경찰에서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향적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법적·제도적 한계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을 경찰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소년범죄를 처리함에 있어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비단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는 갈등의 당사자들인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 모두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찰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찰이 회복적 사법 실천의 서포터 내지 주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PSI](#)



CPTED의 법제도 운영에 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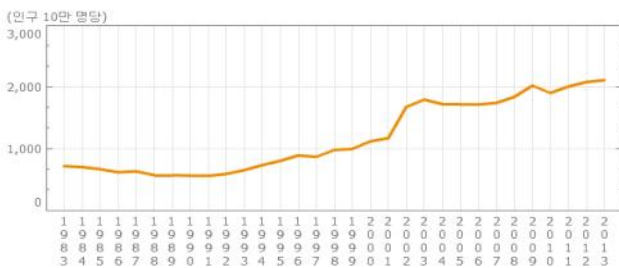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용길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은 무엇인가?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1908-1970)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이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두 번째 단계로 신체적·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 지기를 바라는 안전의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형사사범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살인과 강도는 감소추세이나 강간과 절도·폭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범죄율



전반적인 범죄율과 주요 범죄 중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및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강간·폭행·절도의 범죄발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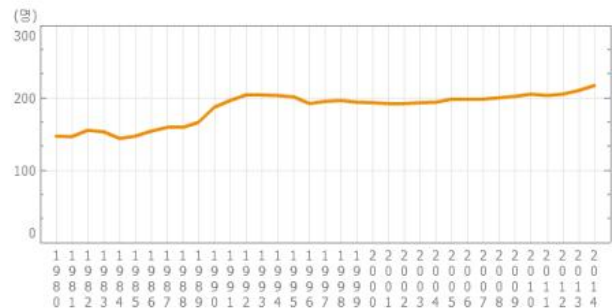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력의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112신고의 접수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범죄유형별 10만 명당 발생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살인	2.3	2.8	2.6	2.5	2.1	1.9
강도	9.9	13.0	8.9	8.1	5.3	4.0
강간 (성폭력범포함)	30.8	32.8	40.4	44.3	42.7	53.6
폭행	220.5	234.9	221.8	247.7	256.2	251.9
절도	456.1	521.9	542.4	565.6	586.1	579.1
범죄율	1,834	2,019	1,901	2,003	2,077	2,106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범죄통계(2015)

<그림 2>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그림 3> 112 신고접수 현황



위와 같은 공식적인 범죄지표가 아니어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으나 국민들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체감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실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이 있으나 특히 범죄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경찰력에만 의존한 범죄대응시스템의 물리적 한계에 기인한다. 범죄문제는 경찰력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범죄예방을 위해 각종 도시 문제, 특히 도시 범죄와 도시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라 칭함)가 있다.

환경 개선이 범죄를 예방한다?

CPTED라는 용어는 1971년 제프리(C. Ray Jeffery)가 그의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현재 도시설계·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CPTED는 ‘범죄 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범죄인·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여 예방하며,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전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범죄예방기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1960년대 등장한 CPTED는 1970년대 본격

적으로 개념과 기본전략이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의 안전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양적·물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깨진 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환경 범죄학’ 등 CPTED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예방이론들이 제시되면서 이론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많은 국가와 다양한 기관에서 CPTED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현대의 셉테드 모형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다.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된 CPTED 뿐만 아니라 영국의 SBD 등 각국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모형들이 만들어졌다.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1세대 CPTED에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인 2세대 CPTED가 발전해온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CPTED는 단순히 건축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범죄학과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맞물려 통섭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CPTED 일반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에서는 범죄예방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CPTED 관련 법규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미국 애리조나 템페시는 ‘CPTED조례’를 제정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 사용을 규제하고 CPTED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표준 ENV 14383-2(도시계획/건축설계를 통한 범죄 및 두려움 감소)이라는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표준이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 적용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법(1998)’과 ‘인권법(1998)’의 제정을 통해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가 정부의 중요한 임무이

며 국민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CPTED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CPTED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법제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CPTED 추진 주체와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CPTED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요소이지만 한편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률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참여 및 협력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와 관련된 법제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CPTED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차원의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점차 추진되고 있다. CPTED 법률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경찰청은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에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등의 법률개정을 요구하였다.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국토의 계획, 도시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도시재정비계획의 내용에 ‘범죄예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요구된 법률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며, 2011년 5월 30일자 개정 및 동년 12월 1일자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각 법률이 추구하는 도시재정비, 국토개발, 주거환경정비, 도중합계획 및 도시공원의 조성에 있어 계획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원룸 및 고시텔 등을 신축할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셉테드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CPTED 법제화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CPTED의 적용을 포함한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은 신도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토이용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공원의 조성 등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전반에 CPTED 전략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CPTED 법제화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2011년 이후 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관련되는 6개의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범죄예방을 환경개선의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CPTED의 원리를 명시한 「건축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법률에는 ‘범죄예방계획’이라는 용어 외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나 평가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로 순찰강화, 초소 등 관련시설물의 설치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기본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매년 자치단체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동떨어진 사업들이 진행되며 ‘보여주기식 행정’ 혹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많았음을 상기한다면 범죄예방조치는 경찰의 기본활동에 대한 요청보다는 환경개선과의 연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3개 법률안은 이러한 형식적인 전략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에서도 범죄예방계획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지 의심스럽다.

이런 결과는 이들 법률이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고 범죄예방계획의 항목추가는 경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관리주체와 범죄예방의 실행주체가 다르고, 상호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영국과 미국·호주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CPTED관련 단일 법률 또는 조례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단일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위 관련 법률들은 CPTED를 적용하는 대상범위로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단일 법률에서는 체계적인 CPTED 추진과정과 절차 그리고 전문성강화를 위한 조치, 사후적인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PTED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법률에 따른 안전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후 범죄발생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며

최근 CPTED에 관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의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라면 경찰청은 CPTED를 바탕으로 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를 담고 있다.

CPTED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법률제정의 형식과 절차와는 달리 2014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조례화가 먼저 추진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주체인 자치단체들이 사업예산의 확보

및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PTED관련 개별 법률 등을 통해서 사업별 추진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이 가지는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개별 법률들을 사업의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CPTED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법률은 향후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기념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난 호(제47호) 당첨자: 김재명

□ 보내실 내용

-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thkwon@police.go.kr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권태형 연구관
 편집위원 : 이춘삼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16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전화 : 031-620-2574 (경비) 61-2574
- e-mail : thkwon@police.go.kr

한국 민간조사업의 전개와 시장규모, 그리고 법제화 이후의 경제적 효과 추정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정웅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서비스(fact-finding service)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민간조사업체들은 탐정 등 유사명칭 조차도 사용하지 못한 채¹⁾ 컨설팅·심부름센터 등의 이름 아래 음성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면허나 자격 없이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탐정업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 法律第60号)이 제정되어 2007. 6.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동 법률 하에 신고제는 유지하되 국가가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법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는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에 의해 공인탐정법 초안이 마련된 이후 현 19대 국회(2012-2016)에서만 2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송영근의원, 윤재옥의원),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고용노동부, 2014. 3. 18)에 따라 민간조사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보고, 2015년 말까지 국무총리실 중심으

로 정부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5. 5. 2). 이와 병행하여 민간부문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민간조사 법안 내용 자체의 논의 보다 최근까지 전개된 민간조사업의 추이와 시장 규모, 향후 법제화 시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민간조사업의 추이와 규모

한국 민간조사업의 역사는 1910년대 신용고지업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흥신소(興信所)라는 상호의 업체가 등장하면서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흥신소는 1961년 흥신업단속법에 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었으나 동법의 시행 이후 흥신소는 허가된 신용조사 업무 이외에도 불법적인 채권추심대행, 청부폭력 등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정부 당국으로부터 집중 단속을 받았다.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977년 기존 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는 한편 새로이 신용조사업법을 마련하여 '흥신업'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업'이라는 영업명을 뚜렷이 하였지만, 이러한 정부 단속과 법규제에 대응하여 기존 흥신소는 오히려 197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고 각종의

1) 현행 신용정보보호법은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거나,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4호, 5호 및 제50조(벌칙) 제②항).

사실조사 영업을 지속하였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개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취지를 더하여 신용조사업법을 1995년에 신용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이듬해 1996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내 민간조사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개인 사생활보호의 강화와 다국적 조사 업체의 진출 양상과는 달리 국내 민간조사업체들은 여전히 법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최근까지 컨설팅·탐정사무소·심부름센터 등의 상호 아래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심부름센터만 전국에 총 1,574개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제화 시 경제적 효과 추정

우리나라 민간조사 시장은 합법화 직후 정상적인 영업활동 아래 단기적으로 4,877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민간조사업이 일본과 같이 GDP 대비 0.1% 수준까지 성장할 경우 그 매출은 1조 2,724억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조사업이 속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민간조사업의 대리 계수로 적용하면, 동 산업 생산유발계수(2010년, 1.573)에 따른 합법화 직후 생산유발효과는 7,672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조사업은 전후방 연쇄효과에 의한 산업분류 상,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가 높은 반면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가 낮은 이른바 ‘중간수요적 原始産業’ 유형에 속한다. 이는 민간조사업이 조사 장비관련 제조업 내지 조사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업과 같은 후방산업보다는, 조사 업무 자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 예컨대, 기업 내 보안조사를 요구하는 첨단기술 제조업, 기업시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유통업, 그 외 금

융·통신 등의 전방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후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보면, 동 산업 취업유발계수(2010년, 11.5)를 적용할 때 그 취업유발효과는 5,609명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조사업이 제도화되면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조사업 자체 및 여타 산업에 5,600 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민간조사업이 장기적인 성장 단계(매출액 1조 2,724억 규모)에 접어들 경우에는 약 14,633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치안비용 절감 측면을 보면,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후 경찰이 수사 前단계의 업무를 민간조사관과 협조하여 조사할 경우 경찰관 1인당 0.051명의 경력이 절약될 수 있고(기본근무시간 기준), 이를 수사 분야 경찰관 정원 18,469명(2012년 12월말 기준)에 대비하면 약 942명의 경력이 절약되고, 현원 18,233명과 대비하면 약 930명의 경력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이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시민 권리보호 및 사회안전감 제고라는 제도화 경로를 밟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축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2007년 탐정업법 도입과 같은 법제화 노력을 통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민간조사 시장의 양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신뢰성) 축적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감소, 나아가 장기적인 산업성장이라는 선순환을 도모해가야 할 것이다.²⁾ **PSI**

2) 이 글은 韓國經營史學會 국제학술대회 발표문(日本東京, 2014. 9. 13) 및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발표문(2015. 6. 17)의 일부임.

경찰 홍보활동의 방향성 변화에 대한 제언



경찰청 새경찰추진단 경사 정승혁

우리는 평소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매체 뿐 아니라 거리를 걸으며 접하게 되는 많은 홍보물, 그리고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많은 홍보물 등 그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그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러한 홍보 활동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 역시 홍보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영상·웹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여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범인검거 소식 및 치안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게 배포하기도 한다. 국민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경찰홍보’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가? 최근 경찰은 ‘언론을 활용한 홍보’와 ‘SNS를 활용한 홍보’의 두 가지 방법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언론을 활용한 홍보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경찰시각의 홍보콘텐츠가 아닌

언론시각의 콘텐츠가 생산되어 국민에게 제공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의 시각을 전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한 SNS 홍보활동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홍보활동은 경찰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근의 홍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트렌드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경찰의 홍보와 기업의 홍보는 기본적인 개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홍보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돈을 받고 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주고 사오기 전까지는 기업의 상품은 ‘남의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많은 홍보물을 보고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가 자신들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좋은 홍보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다르다. ‘치안 서비스’는 이미 소비자인 국민의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국민은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기업처럼 상품을 팔아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고, 국민 역시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다른 경찰과 비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택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경찰의 치안 서비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의 홍보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 참여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이다.

위에 언급했듯, 치안은 남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미래치안은 국민과 함께 활동하는 ‘협력치안’과 ‘참여치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경찰만으로 치안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경찰과 국민이 함께 ‘치안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 ‘치안 거버넌스’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가까운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의 홍보 역시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시각에서 경찰의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치안 거버넌스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홍보(Wants)와 국민에게 필요한 홍보(Needs)를 구분하여 그 홍보의 방식과 플랫폼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청 단위의 홍보활동에서의 본청단위의 홍보활동으로 전환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서울경찰’과 ‘경기경찰’ 그리고 ‘부산경찰’이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일 생활권이고, 국민들의 생활권은 더더욱 광역화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등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경찰홍보 활동은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홍보는 이제 ‘지역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은 ‘서울경찰’과 ‘경기경찰’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경찰들끼리 지역에 따른 경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수의 콘텐츠 생산이 아닌 소위 양질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일선 직원들에게는 홍보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홍보의 아웃소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과 기능중심의 홍보활동의 검토를 제안한다.

‘일의 절반은 홍보’라는 말이 있다.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홍보업무는 분명 중요한 업무영역임이 확실하다. 경찰홍보의 방향이 조금 더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으로 발전하여 ‘치안 거버넌스’를 이루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PSI**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치안정책리뷰에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 중 게재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외국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thkwonr@police.go.kr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관련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김 영 수

범죄피해자 보호관

미국은 범죄피해자 보호관(CVS: Victim Advocate or Crime Victim Specialists)을 전문직위로 인식하여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civilian)으로 임명한다. 범죄피해자 보호관은 소속 경찰서에서 퇴직 시까지 보직변경 없이 관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상담·지원 등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관이 남성일 경우 여성 범죄피해자(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상담과 같은 지원이 곤란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관은 반드시 여성으로 배치한다.

범죄피해자 보호관 채용 요건은 ‘범죄피해자 보호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며, 채용 후에도 경찰에 적합한 피해자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민감한 업무 수행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FBI에서는 유가족에게 피해자 사망사실을 알리는 방법(death notification training) 등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on-offline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및 피해자 자동 통보시스템

미국 경찰은 경찰관 및 범죄피해자 보호관의 직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상황별·유형별 조치사항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경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관의 임무 또는 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¹⁾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통보시스템(VNS: Victim

Notification System)에 가입하면 경찰 형사사법시스템은 자동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편물, 이메일, 전화, SNS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통보시스템을 KICS(형사사법포털)과 연계하여 사건 발생 시부터 만기출소 등 사법절차 종료 시까지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강화 필요성

미국은 연방 및 각 지자체별로 「범죄피해자(및 증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Crime Victims Rights Act)」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대민서비스 내지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권리’로 규정한다. 피해자는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미란다 원칙처럼 피해자의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 연방 형사법(US Code)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①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②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경과 및 석방·탈출 등을 통보받을 권리
- ③ 가해자 공판에 참석할 권리
- ④ 가해자 석방, 탄원, 선고, 가석방 등에 관한 공판에서 발언할 권리
- 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⑥ 법률에 의해 충분하고 적시성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

1) 워싱턴 DC경찰 매뉴얼(General Order 204.06, www.mpdc.dc.gov/node/423092) 참조.

- ⑦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형사절차 진행을 요구할 권리
- ⑧ 피해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존중 하에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우리나라도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를 개정하거나, 가칭 「범죄피해자 권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을 통해 피해발생 단계에서부터 확정판결 이후 단계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권리는 유형별로 ‘형사절차 진행 단계별 정보와 조력의 제공’, ‘형사절차 이외의 조력과 정보의 제공’, ‘신변보호’, ‘경제적 보상’, ‘재판종료 후 사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관 전문 교육 및 자격증 부여

미국 법무부 범죄피해자 대책실(OVC: Office for Victims of Crime) 산하기관인 교육 기술지원센터(TTAC: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피해자보호기구(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에서는 관련분야 교육 프로그램 이수, 근무경력, 전공학과(사회사업과, 형사정책과, 심리학과, 피해자학과)등 이력과 학력에 따라 피해자보호관 자격증(credential)을 4단계(임시, 초급, 중급, 고급)로 나누어 발급한다. 피해자보호관 자격증 보유자는 주로 경찰서, 로펌, 사회봉사기관, 법원, 병원, 피해자 대피소(victim shelters), 피해자 단체 등에서 근무한다.

한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피해자보호 협회, 연합회 등 단체에서 법적 수권을 받아 공인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정책 제언

경찰과 법원, 검찰, 교도행정기관, 경찰 관련 대학, 피해자 관련 NGO, 국회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권리 고지의무를 법제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관(CVS) 전문교육, 자격인증, 채용 필요성 등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 경찰관련 학과에 범죄피해자 보호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독려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Korea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등 적합한 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관(CVS) 자격(민간자격증)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피해자 NGO·경찰관련 대학 등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한다.

각 경찰서 피해자 보호관을 연차적으로 경찰관에서 일반직 여성 전문가로 교체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교육·훈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관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대상 범죄피해자는 주로 강력·여성·가정폭력 등 형사·여청 기능의 대상이지만 다른 수사 기능에서도 보호대상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므로 범죄피해자 보호관 업무는 우선 총괄 가능한 본청·지방청·경찰서의 ‘수사과’가 담당하고 향후 별도직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²⁾ [PSI](#)



2) 감사관실은 업무성격상 수사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미국 경찰개혁 보고서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주재관 총경 이준형



들어가며

2015년 8월 9일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소도시 퍼거슨사에서 백인경관의 흑인 청년 총격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퍼거슨사태’ 1주기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흑백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작년에 발생한 퍼거슨사태는 그동안 잠재해 있던 흑백인종차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필자는 작년 이맘때 미국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주재관으로 부임하였으며 부임한지 이틀만에 퍼거슨사태로 인한 한인동포들의 피해현황 및 현지상황과약을 위해 퍼거슨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한국에서 말로만 듣던 흑백인종차별의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퍼거슨 사태이후 미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는 미 전역이 흑백인종차별로 인한 시위로 몸살을 앓기도 한 것 같다.

흑백인종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이었다. 특히 경찰의 소수인종 특히 흑인들에 대한 과도한 경찰력 집행이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확보하고 경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대

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1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5개월 동안의 활동기간을 거쳐 마침내 2015년 5월 18일 Final Report(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를 제출하게 되었다.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Final Report를 요약 번역한 내용이며 분명 21세기 선진 경찰을 지향하는 우리경찰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 소개해 본다.

소 개 Introduction

경찰기관과 그들이 보호하고 봉사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신뢰는 지역사회 안정,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치안유지활동(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지역경찰과 그들이 보호하고 봉사하는 시민들과의 관계의 분열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전담반을 신설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담반에게 공공의 신뢰를 얻으면서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안유지활동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하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과 2월 전담반이 7차례 만나 모색한 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이다. 11명의 전담반과 경찰관, 지역사회대표, 시민지도자, 연구원,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00명 이상의 이해당사자들(그 외에도 많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증언서등을 제출하여 문제제기 등 의견을 내놓음)은 워싱턴 DC, 아리조나주 피닉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만나 회의를 가졌다.

전담반의 제안보고서는 6개의 주제 또는 ‘장(Pillar)’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주제는 1. 신뢰와 정당성 구축(Building Trust & Legitimacy) 2. 정책과 관리감독(Policy & Oversight) 3. 과학기술과 사회매체(Technology & Social Media) 4. 지역사회치안활동과 범죄감소(Community Policing & Crime Reduction) 5. 훈련과 교육(Training & Education) 6.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Officer Wellness & Safety)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전담반은 이와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2가지의 매우 중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형사제도를 점검하고 개혁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범죄사법전담반(National Crime and Justice Task Force)의 신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통령이 빈곤, 교육, 보건, 안전과 같은 기초적인 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보는 지역사회 규모의 해결책(이니셔티브)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장: 신뢰와 정당성 구축
Building Trust & Legitimacy

경찰과 시민 양측 간의 신뢰와 정당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찰기관과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와 실

행과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타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시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하는 사람들과만 정당성을 논의하려고 하며 또한 경찰기관이 지역사회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통제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민과 경찰기관은 신뢰를 구축하기 힘들다. 제1장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집행문화(Law enforcement culture)는 전사(Warrior)와 같은 이미지 보다는 경찰기관들 사이와 시민과의 신뢰와 정당성을 구축하는 보호의 이미지로 수용 되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경찰기관들이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을 내·외부의 정책과 실행(practice) 지도원리로 채택하여 경찰관들이 높은 계급의 경찰과 시민들과의 관계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기관들은 시민들의 신뢰와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투명성 있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화로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을 때만이 경찰기관이 내린 결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정책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기관은 시민들과의 신뢰와 정당성을 성립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시민들이 경찰이 내린 결정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기관들은 범죄발생률이 대체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법 집행활동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활동들을 적

극적으로 주도하여 한다. 또한 경찰기관들은 지역사회가 경찰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그 지역의 범죄율과도 큰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경찰 신뢰도를 매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해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경찰기관은 인종, 성별, 언어, 인생경험,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다양한 경찰을 고용하여 경찰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역사회를 상대하고 그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장: 정책과 관리감독
Policy & Oversight**

제2장은 경찰이 이미 수립되어있는 정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시 그 정책이 지역사회 가치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찰기관은 지역주민들, 특히 범죄로 인해 불균형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관계를 형성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기관들은 무력사용(무력사용 단계적 축소의 중요성 포함), 집단시위(집단시위 시 알맞은 무기사용, 특히 라이플총과 병력수송장갑차 사용), 수색 전 동의 얻기, 성별구별 능력, 인종 프로파일링, 실적평가 등을 포함한 분명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들은 다양한 인구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정책과 총합적인 자료는 투명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경찰기관이 주기적으로 정책과 절차를 리뷰, 중요한 사건들을 범죄사건과 행정조사로 나누어 비정벌적인 상호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민간인이 정책을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책과 관리감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미 법무부는 COPS Office와 Office of Justice Programs를 통하여 소규모의 경찰기관이 중개 정부기관으로 발전하고, 경찰과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역 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 법무부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rectors of Law Enforcement Standards and Training(IADLEST)와 협력하여 National Decertification Index를 확대해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과 소셜미디어
Technology & Social Media**

과학기술의 사용은 정책실행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정당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술도입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정확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도입은 정책담당부서(policy department)가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의 투명성, 책임감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다방면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경찰기관들은 새로운 기술채택이 사생활 침해 없이 진화하며 효율적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인식, 가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기관이 과학기술과 소셜미디어를 도입, 사용,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경찰기관이 과학기술과 소셜미디어 도입 분야에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미법무부와 경찰기관은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개발분야에 있어서 국가적인 기준을 세

위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개발분야는 청각, 시각, 생체정부, FirstNet과 같은 전파스펙트럼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적인 기준은 경찰기관 간 뿐만이 아닌 경찰기관과 사법권끼리의 호환가능성, 상호운영성, 도입 필요성을 지목해야 하며 민간과 인권보호도 유지해야 한다. 경찰기관의 과학기술 도입은 국가기준을 준수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서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기관들은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높인 지역을 선택하고 그들의 정책을 모델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지역사회치안활동과 범죄감소
Community Policing & Crime Reduction

제4장은 지역사회 치안유지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지역사회 치안유지활동은 지역시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공안전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경찰기관들은 지역시민들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에 맞는 해결점을 도입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 경찰기관은 공공안정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단체와 접촉하여 계획, 도입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복잡한 요인도 정책에 접합시켜야 한다.

지역사회는 특히 범죄와 폭력의 노출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치안유지활동의 관행과 문화를 지지해야 한다. 경찰기관은 처벌을 내릴 때 청소년에게 오명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하찮은 존재 같은 기분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결정

권이 있을 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고 리서치와 문제점 해결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를 격려하며 경찰관과 청소년들 간의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 리더십 훈련과 생활기술 훈련을 발전시키고 재원을 조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훈련과 교육
Training & Education

현 시대 인종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경찰기관의 책임이 더 확대됨에 따라 더 상세하고 효율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오늘날의 경찰간부(line officer)와 지도자층은 국제테러, 과학기술의 진화, 이민급증, 법의 변화, 새로운 문화,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사건 범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장은 경찰기관에서 훈련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집중한다. 경찰기관들은 훈련과 교육의 효율성과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이 분야에 전문가를 가담시켜 모든 경찰과 관계자들에게 훈련과 리더십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연방 정부는 경찰기관의 훈련과 교육의 추가지원을 위하여 미국 전역의 훈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미국 전체에 수준 높은 교육이 보장될 수 있게 하며 대학과 경찰아카데미 등에 교육혁신 허브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고위공무원의 경찰 석사학위를 받는 교육기관들은 21세기의 경찰기관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경찰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Peace Officer and Standards Training (POST) 위원회는 현재 복무중인 경찰관들의

대응방법을 제고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거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치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CIT)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중독환자, 선입견과 문화의 민감성,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치안유지활동, 절차공정성, 효과적인 사회상호관계와 전략적 기술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제6장: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
Officer Wellness & Safety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그들의 동료, 일하는 기관,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제6장은 다방면에서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제도 도입과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미 법무부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향상시키고 육성해야 한다. 미 법무부가 권장하는 2가지의 전략은 1)각 부서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올바른 근무시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것과 2)경찰관의 사망 수만이 아닌 부상 수, 부상에 가까웠던 상황의 수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찰기관은 기관마다 그곳과 맞는 복지와 안전사항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경찰기관의 경찰들에게 개인 소지용 응급도구, 훈련, 방탄조끼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들이 안전벨트, 방탄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만약에 안전장치들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인지시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내부절차공정성원칙(Internal procedural justice principles)은 모든 내부 정책과 상호작용(interaction)

에 있어서 모든 도입되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료들끼리 서로를 평가하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Peer review error management)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권고사항
Recommendation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참고 하여 지금의 정책과 관행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연방경찰기관이 실행 가능한 지점까지 전담반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고 미 법무부 또한 권고사항의 시행을 활성화(enhance)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의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COPS Office 와 OJP는 경찰기관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선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결론

21st Century Policing 전담반 요원들은 이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이 장기적으로 경찰기관들과 지역사회의 관계 발전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PSI](#)

편집자 주) 이 글에서 소개 된 보고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ops.usdoj.gov/pdf/taskforce/TaskForce_FinalReport.pdf

연구소 소식

◆ 2015년 상반기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연구소는 7월 1일 경찰공제회에서 ‘창경 70주년, 글로벌 치안한류(K-Police Wave)의 나아갈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치안논총(제31집) 발간 및 배포

연구소는 7월 17일 2014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중에서 선정된 4건의 연구보고서를 모은 「치안논총(제31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연번	제목	연구자
1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이호용
2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운영방안	아주대 이철기
3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방안	경기대 이주락
4	안전사회에서 안전법의 영역설정과 경찰의 예방임무의 범위	계명대 김혜경

◆ 2015년 경찰대학 하계 합동 워크숍

연구소는 8월 13~14일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경찰대학 하계 합동워크숍에 참여하였다. 경찰대학 교수·연구관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찰대학 미래발전 방안 추진 계획 등 경찰대학의 주요 현안 및 대학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관 동정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8월 25~26일 중국 심양에서 개최되는 제13회 한중 형법학술세미나에 발제자(주제: 테러범죄 대응과 인권보장)로 참석하였다.

연구소 인사

- 전입 7월 17일 연구소 기획운영과장으로 박순기 총경이 부임하였다.
- 전출 7월 16일 사회안정대책연구실 김문귀 연구관이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7월 17일 이봉행 기획운영과장이 경기지방경찰청 김포경찰서장으로, 이명훈 연구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으로, 고창경 연구관이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인사이동 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